

-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9.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디지털정보과]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디지털정보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4차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시설의 설치 및 명칭,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탁기간과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 사용자의 의무,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등 반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에서는 입장 및 체험의 제한 기준과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시설물의 각종 사고를 대비하고 사용자의 생명·신체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14조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 8. 12일부터 9.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4. 9.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 및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디지털 친숙도 제고 및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4. 9.

제출자: 달서구청장
(디지털정보과장)

1. 제안이유

-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격한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명칭, 기능, 운영 등(안 제3조~안 제5조)
- 다. 사용허가, 사용자의 의무, 사용허가의 제한 등(안 제6조~안 제8조)
- 라.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반환, 입장 및 체험 제한(안 제9조~안 제11조)
- 마.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보험가입, 편의시설 설치 등(안 제12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본예산 반영 예정
-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8. 12. ~ 9. 2.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격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교육실, 체험공간, 스튜디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로봇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 또는 수강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수강료”란 교육 수강자가 각각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서디지털체험센터
2. 달서디지털창작센터
3. 달서메타버스체험관

제4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지원
2.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디지털 제작 관련 프로그램·사업 개발 및 운영
3. 디지털 소외 극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관리 및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① 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및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대상자는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② 사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수강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입장 및 체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사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이외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시설 및 장비 등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회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시설 설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시설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제9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 달서디지털체험센터

시 설 명	단 위	금 액(원)	비 고
교육실(강의실)	1시간	3,000	

※ 비고

- 이용시간은 1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초과 시에도 위 기준으로 한다.

○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시 설 명	단 위	금 액(원)	비 고
교육실(강의실)	1시간	3,000	
대형 스튜디오	1시간	6,000	장비포함
소형 스튜디오	1시간	3,000	장비포함

※ 비고

- 이용시간은 1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설 사용은 해당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에게 사용허가를 한다.
- 초과 시에도 위 기준으로 한다.

2. 수강료

구 분	수강료	비 고
교육 및 체험 강좌	10,000원 이하	· 1회 2시간
그 밖에	·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따로 정함 · 교재 및 재료비 별도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경 대상(제9조제3항 관련)

구분	감경율 (할인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2. 「장애인복지법」 제32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0%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사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50%
5.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30%
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	30%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30%
8.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 감경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의 경우로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디지털체험교육시설(2개소)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등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2025년부터 추진할 사업(5년)에 대한 비용 추계
 - 시설 2개소(달서디지털체험센터, 달서디지털창작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수익금(사용료, 수강료)은 시설의 세입예산으로 처리하여, 시설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 사용
- 나. 추계의 결과: 1,717,60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구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붙임

6. 작성자: 기획경제국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 고
세 입	341,520	342,520	343,520	344,520	345,520	
사용료 및 수강료	11,520	12,520	13,520	14,520	15,520	
지방세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세 출	341,520	342,520	343,520	344,520	345,520	
인건비, 운영비 등	361,520	32,520	363,520	364,520	365,520	공공운영비 (약2.2%)물가 상승률 반영
재원 조달	341,520	342,520	343,520	344,520	345,520	
소계	341,520	342,520	343,520	344,520	345,520	
구비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수익금(사용료 등)	11,520	12,520	13,520	14,520	15,520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